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3. 제안 이유

-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와 첨단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첨단기술과 산업의 선점이 그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성장 동력원이 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미래유망 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및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 골자

-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 과제공모 사업등에 보조, 출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은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신기술 연구개발 과제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등에 대한 자문으로 함 (제4조)
-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로 구성함 (제5조제1항)
- 전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2항)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15인 이내로 구성함 (제5조제3항)
-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공무원 및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함 (제5조제4항)
-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함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11조)

5. 검토 의견

-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의 선점을 위한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 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호에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매5년마다 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별개 조항으로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조의 첨단산업지원사업 각호중 6호의 '전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문구의 설명이 필요하며
- 제5조 1항의 첨단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3항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수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상한인원을 정한 것으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취지인 것이나 위원선임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회의 위원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제5조 4항의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 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자'는 같은항의 1~3의 각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석상 문제가 있고, 각호중 어느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 바 '각호의 1'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동조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위원회 위촉대상자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관련기관단체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동조 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자'를 '관련분야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자 또는 경험자'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핵심전략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로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